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96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5
1. 총괄적 검토	5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5
나. 제정 필요성	6
다. 주관 부처에 대한 검토	10
2. 조문별 검토	14
가.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제2조)	14
나. 정의(안 제3조)	17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제5조)	24

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6조)	26
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안 제7조)	30
바.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반영 및 교원의 양성·연수(안 제8조·제9조)	32
사.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보장,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 생애주 기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안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	36
아.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 연차보고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안 제14조·제15조·제16조)	41
자. 업무의 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17조·제18조 ·제19조)	44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주민의원 등 11인

나. 제 출 일 : 2026. 6. 25.

다.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세계를 인식하고 공적 사안에 참여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보편화로 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며 활용하는가는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조작인지 가려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영상·음성·이미지가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딥페이크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그 중요성에 걸맞은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임. 관련 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탓에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노인·장애인·농어촌 주민 등 정보취약계층과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기 쉬워, 미디어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추진체계와 지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고자 함.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학교 안팎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을 보장하며,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적 공론장의 형성과 국민의 정보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국민이 연령·성별·장애·소득·거주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표현, 민주적 소통, 디지털 윤리를 함양하도록 하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며 창의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소통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을 교육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3조).

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 내용과 제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충실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함(안 제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및 정보취약계층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자. 교육부장관은 2년마다 연령대별·지역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매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 실적과 성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제정안은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되어 있음.

< 제정법안의 조문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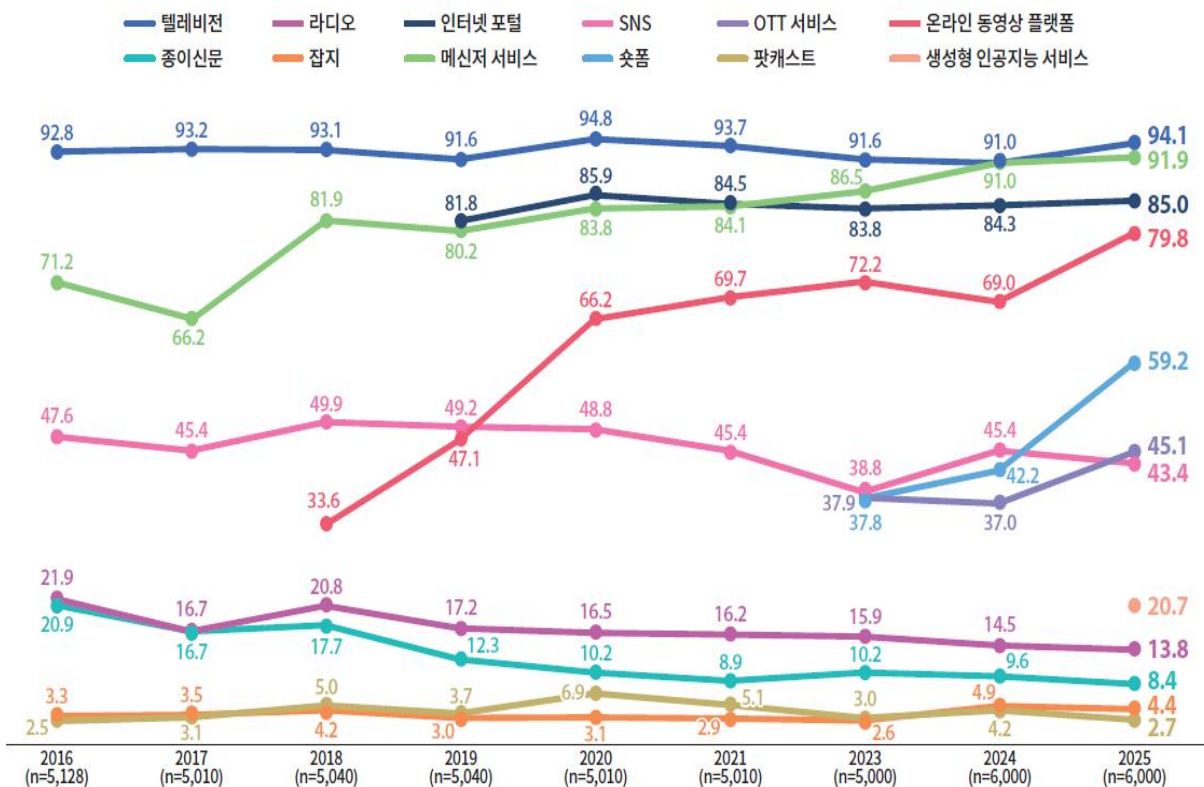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 목적	제11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
제2조 기본이념	제12조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
제3조 정의	제13조 생애주기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 연차보고서
제6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6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제7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제17조 민간협력
제8조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9조 교원의 양성 및 연수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시행일 : 공포 후 1년	

나. 제정 필요성

최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민의 미디어 이용 채널이 다변화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이용 미디어가 다변화되고 있음.

일례로 아래와 같이 뉴스를 접하는 채널도 기존의 종이신문·TV 방송·라디오 방송 외에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숏폼·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¹⁾

[2016년~2025년 미디어별 뉴스 이용률 추이]



※ 자료: 「2025 언론 수용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12.31.

1) 「2025 언론 수용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12.31.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하에서 장애인·고령층·저소득층·농어민 등 주요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기기 보유(접근)·디지털 기기의 이용역량 및 활용 능력은 일반인에 비해 크게는 30%p 가까이 낮은 수준²⁾을 보이고 있어 사회 구성원 간 디지털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임.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2025년 기준)>

구 분	종합능력	보유(접근)정도	이용역량	활용능력
일반인	100	100	100	100
장애인	84.1	98.1	77.0	84.3
고령층	71.8	95.4	56.2	75.6
저소득층	97.0	99.8	94.1	98.5
농어민	80.6	97.2	72.4	80.5

※자료: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12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한 뉴스나 시사정보의 언론사 출처를 확인하는 인원의 비중(22.5%)이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 응답자(45.4%)의 절반 수준에 불과³⁾할 정도로, 디지털 미디어 매체를 통한 뉴스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비판적 이해능력의 제고도 필요한 상황임.

이와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

2)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12.

3) 「1인당 4개 넘는 소셜미디어 써도… ‘국민 소셜미디어’는 여전히 카톡·유튜브」, 한국언론진흥재단 보도자료, 2025.2.6.

구하고 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관련 정책과 사업은 특정 주관부서 없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부처 간 협업이나 종합적인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 주요 부처 미디어 교육 현황 >

구분	중점 분야	사업 내용
문화부	뉴스, 영화, 방송,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 및 콘텐츠의 진흥 및 교육 주관	- (프로그램) ▲각급 학교 및 계층별 사회 미디어교육, 교사연수, 대국민 캠페인 등 ▲방송·게임·영화·웹툰 등에 대한 이용자 교육 및 체험 등 - (인프라)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 미디어교육원(1개소) 등
방미통위	장비와 시설 바탕으로 미디어 제작 중심 교육 특화	- (프로그램) 유·초·중·고교, 대학, 사회시설, 방송사 강의 지원 등 - (인프라)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제도, 시청자미디어센터(12개소) 등
교육부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미디어교육 추진	- (프로그램) 교사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학생 디지털 미디어 캠프 등 - (인프라) 학교미디어교육센터(3개소) 등
과기부	디지털 기기 활용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과의존 예방	- (프로그램·인프라)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배움터 운영 등(디지털 역량, 과의존 예방 등)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제정안은 이처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참고로, 제18대 국회부터 제22대 국회 현재(2026.9.)까지 동 제정안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미디어교육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

< 미디어교육 관련 제정 법률 발의 현황 >

구분	대표 발의	법안 소관 상임위	미디어교육 심의위원회		미디어교육 주관기관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소속	위원장		
22대	이주희 '26.8.	과방위	방미통위 (25명 이내)	방미통위 위원 중 방미통위 위원장이 지명	방미통위	5년 (방미통위가 위원회 심의 거쳐 수립)
	박주민 '26.6.	문체위	국무총리 (25명 이내)	국무총리	교육부	5년 (국무총리가 위원회 심의로 수립)
	김우영 '26.5.	과방위	방미통위 (19명 이내)	방미통위원장, 위촉위원 중 호선 공동	방미통위	3년 (위원회가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의 의견 들어 수립)
	김승원 '25.12.	문체위	국무총리 (25명 이내)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	교육부, 과기부, 문체부, 복지부, 방미통위 공동 주관 ※ 국무조정실 총괄	5년 (국무총리가 위원회 심의로 수립)
	박수현 '25.9.	문체위	문체부 (25명 이내)	문체부장관, 위촉위원 중 호선 공동	문체부	3년 (문체부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이훈기 '25.2.	과방위	방미통위 (18명 이내)	방미통위원장, 위촉위원 중 호선 위원 공동	방미통위	3년 (방미통위가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의 의견 들어 수립)
21대	정경희 '22.11.	교육위	사회부총리 (25명 이내)	사회부총리	교육부, 문체부, 방미통위 공동 (분야 구분)	5년 (주관기관이 위원회 심의 거쳐 수립)
	권인숙 '21.7.	교육위	사회부총리 (25명 이내)	사회부총리	교육부, 문체부, 방미통위 공동	5년 (주관기관 공동으로 위원회 심의 거쳐 수립)
	정필모 '20.8.	과방위	방미통위 (18명 이내)	방미통위원장, 위촉위원 중 호선 위원 공동	방미통위	5년 (위원회에서 특별시장 등 의견 들어 수립)
20대	신경민 '18.5.	과방위	방미통위 (11명 이내)	방미통위원장이 방미통위 상임위원 중 위촉	방미통위	5년 (방미통위에서 교육부, 문체부 협의해서 수립)
	유은혜 '18.5.	문체위	국무총리 (25명 이내)	위촉위원 중 호선	교육부, 문체부, 방미통위	5년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계획 수립 후 위원회에서 종합)
19대	김희정 '13.9.	과방위	-	-	문체부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총괄)	5년 (문체부가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수립)
	최민희 '12.8.	과방위	방미통위, 교과부 (15명 이내)	위원회 호선 후 방미통위가 교과부와 협의하여 임명	방미통위 (교과부 협의)	5년 (방미통위가 교과부와 협의하여 수립)
18대	이경숙 '07.4.	문광위	문체부 (9명 이내, 자문위원회)	위원 중 문체부장관 위촉	문체부	5년 (문체부가 수립)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 가공

다. 주관 부처에 대한 검토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국무총리로 하여금 부처별로 산발되어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총괄·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되,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 매년 “연도별 미디어 리터러시 시행계획”을 세우고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의 측정·조사 및 공표, 연차보고서 발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구체적인 정책집행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업무추진 체계의 적절성에 대해 정부부처 간 이견이 있는바, 제정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소관 부처에 대한 논의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간 총괄 조정 역할은 제정안과 같이 국무총리가 주관하거나 교육부 산하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것이 곤란할 경우 다수의 미디어와 독서 정책 등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행계획 등 정책의 구체적 추진 역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접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및 미디어 전반을 주관하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빠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트렌드에 맞춘 교육개발·정책 수립에 강점이 있고,

기존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⁴⁾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를 주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⁵⁾.

③ 교육부는 기본계획은 범부처 차원에서 국무총리가 수립·시행하더라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관련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주관 부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감안할 때, 연도별 시행계획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립·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며,

④ 국무조정실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주체가 다를 경우, 정책의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교육” 총괄부처인 교육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0.8.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4.3.

5) 참고로 동 의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계부처로부터 자료만 제공받아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실질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주관 부처로 기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 미디어 교육 추진 체계에 대한 정부부처별 의견 >

부 처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총괄·조정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의 구체적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 또는 교육부 산하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교육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무총리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국무총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교육부	

검토컨대, 여러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이므로 기본계획 수립 등은 정부부처를 통합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⁶⁾의 역할로 규정하고,

전통적 미디어의 비중 및 영향력이 아직 큰 상황에서 뉴스·방송·게임·영화·웹툰 등 대다수 미디어를 소관하며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도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시행계획 수립 등 구체적 정책 수립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다만, 미디어 교육의 소관 문제는 제18대 국회부터 반복되어 온 쟁점으로, 이전 국회의 논의에서도 소관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던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소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6)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참고로, 법제처는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의 총괄·조정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의 구체적 추진 모두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하도록 하고 있는 유사한 제정안⁷⁾과 관련하여,

미디어정책에 대한 현행 법체계는 각 매체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여러 부처가 서로 다른 영역을 관장하여 이를 특정 부처의 고유 사무로 확정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개별법에 따라 각 부처별로 분야별 특성에 따라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7)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의안번호 제2213112)」,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25.9.18.)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적 공론장의 형성과 <u>국민의 정보 기본권 보장</u>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u>모든 국민은</u> 연령·성별·장애·소득·거주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u>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u> 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국민이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표현, 민주적 소통, 디지털 윤리를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정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법률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적 공론장의 형성과 국민의 정보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국민의 정보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관련 법률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다소 불분명한 개념이므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는 다른 제정안과 같이 불분명한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동 제정안의 “목적”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원의원안, 의안번호 제221561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미디어를 주체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박수현의원안, 의안번호 제221561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임을 정하고, 미디어문화역량 증진의 정책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제정안 제2조는 제정안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표현, 민주적 소통, 디지털 윤리를 균형있게 함양할 수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여부·연령·지역 등 계층별로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국민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으며, 비판적 사고력 등을 균형감 있게 함양

하고,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정안의 기본 이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2025년 기준)>

구 분	종합능력	보유(접근)정도	이용역량	활용능력
일반인	100	100	100	100
장애인	84.1	98.1	77.0	84.3
고령층	71.8	95.4	56.2	75.6
저소득층	97.0	99.8	94.1	98.5
농어민	80.6	97.2	72.4	80.5

※자료: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12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기본이념 제시를 통해 각 기관이 추진 중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일반 국민에게도 각 기관이 일관된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나. 정의(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미디어</u>”란 신문·방송·잡지·인터넷·소셜미디어·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 정보를 생산·전달·유통하는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미디어 <u>리터러시</u>”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며 창의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소통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을 말한다.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 4. “<u>인공지능 생성 콘텐츠</u>”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합성·변조된 음성·영상·이미지·문자 콘텐츠를 말한다. 5. “<u>정보취약계층</u>”이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미디어에 대한 접근 또는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농어촌·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말한다.

제정안 제3조는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미디어” 개념을 현행 다른 법률에 규정된 개념을 직접 인용하며 규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미디어를 “신문·방송·잡지·인터넷·소셜미디어·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 정보를 생산·전달·유통하는 모든 매체”로만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미디어”의 세부사항을 각기 다른 부처 소관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미디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이해도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현행 다른 법률에 규정된 개념을 직접 인용·규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 정 의 건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및 같은 조 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비디오물 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용자가 직접 생성하거나 선택한 정보(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공유·소통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자. 그 밖에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미디어 매체 별 규정 법률 >

소관 부처	법률명	해당 매체
문화체육관광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⁹⁾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¹⁰⁾	정기간행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¹¹⁾	영화, 비디오물, 온라인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¹²⁾	게임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¹³⁾	정보통신서비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법 ¹⁴⁾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¹⁵⁾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無線局)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

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 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사행성게임물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섞여 있는 테마파크시설은 제외한다.
 -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섞여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4)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둘째, “리터러시”란 용어를 “문해력”이라는 우리말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리터러시”란 일반 국민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에 해당하고, 「국어기본법」에서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한다고 규정¹⁶⁾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문해력”이라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¹⁷⁾가 있음¹⁸⁾.

셋째,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1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과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16) 「국립국어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17) 국립국어원도 같은 이유로 “문해력”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2026.7.23.)하고 있음.

18) 다만, 이하에서는 제정안 문구와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 그대로 검토함.

· 합성 · 변조된 음성 · 영상 · 이미지 · 문자 콘텐츠”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개념정의에 따를 경우 범위에 한정이 없는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정의¹⁹⁾를 참고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 · 합성 · 변조된 음성 · 영상 · 이미지 · 문자 콘텐츠 및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이라고 확대·정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넷째, “정보취약계층”의 정의를 대통령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정안은 정보취약계층을 “신체적 · 경제적 ·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미디어에 대한 접근 또는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농어촌 · 도서벽지 거주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정책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바,

동법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신체적 · 경제적 ·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미디어에 대한 접근 또는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농어촌 · 도서벽지 거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과 같이 정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1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통해 미디어와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능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방식을 모두 하나의 개념 아래 아우를 수 있도록 설정한 방향에 대해 동의하며,

특히, “미디어”의 정의를 미디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매체와 관련 법령의 예시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4조·제5조)

제 정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기회가 정보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u>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서 정한 사항보다 국민에게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제정안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동 교육의 기회를 정보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제정안 제5조는 동 제정안을 다른 법률에 비해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단서로 다른 법률에서 동 제정안에 비해 국민에게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미의 명확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통상적인 입법례와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의 문구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미디어 접근·이해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법적 근거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 여러 법률에 분산된 교육·지원 제도의 적용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는 입장임.

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6조)

제 정 안
제6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u>국무총리는</u>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에 따른 <u>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u>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u>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2.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 방안 3. 정보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 4.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등 신기술 환경 대응 교육 방안 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6.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과 관련하여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본계획 및 그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u>교육부장관은</u> 매년 기본계획의 내용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u>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6조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정책의 방향·기본목표, 생애주기별 교육방안, 전문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방안 등을 포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 및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연도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회와 국무총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체계에 대한 정부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정안과 같이 업무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국무조정실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주체가 다를 경우 정책의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므로 교육부가 주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와 관련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국무조정실은 제정안과 같이 교육부 수행이 적절하다는 의견임에 반해, 교육부·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동 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별 의견 >

구 분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총괄·조정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의 구체적 추진
제 정 안	국무총리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	교육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국무조정실	교육부	

둘째, 기본계획 포함 사항에 “관련부처·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 기본교육은 범부처 사업으로 동 제정안이 제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해야 하는 국가정책임. 따라서 부처 간 정책의 중복 추진, 공백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미디어 리터러시 기본교육은 범부처 사업이므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의 중복 추진 등의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의 협의를 선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총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체계는 정책의 연속성과 집행력 확보를 위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며 동의하는 입장임.

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처 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u>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u> ④ <u>위원은</u> 위원장이 임명하되, <u>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디어·교육·법률·장애인·고령자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u>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요건·기준,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7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부처 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의 조정 및 실태조사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역임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고루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범부처 정책으로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업 관계를 마련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며,

정책의 중복 추진 및 공백 방지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관련 전문성과 정책집행 역량을 보유한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교육부 소속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하며 제정안에 동의함.

바.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반영 및 교원의 양성·연수

(안 제8조·제9조)

제 정 안
제8조(학교 교육과정에 반영) ① <u>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교육감은 관할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충실히 실시되도록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의 양성 및 연수)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 직무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u>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 연수 과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초·중 등 정규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 직무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핵심역량 요인을 성장시킬 수 있고, 그 교육 효과는 아동·청소년기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²⁰⁾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과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관련 인력 양성 등 교육 기반을 확대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20) 「핵심역량 중심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 구성 및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67권 제2호, 박윤미·나은영, 2023

다만, 제정안 논의 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초등학교·중학교를 포함한 학교등²¹⁾에 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②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③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및 ④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관련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²²⁾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관련 교과목의 성취기준에 미디어

2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기관
2. 제2조제1호라목의 교육기관 중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제2조제1호마목의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마.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2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반영하였고, 이미 범교과 학습과 연계하여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²³⁾, 「교육기본법」 제22조의5²⁴⁾,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 과정의 수립 및 변경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²⁵⁾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제정안과 같이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임.

다음, 교원의 증원과 관련하여는 교원의 정원 및 신규임용 수요,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임.

23)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4)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참고로 제정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빠짐없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입장이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교육부가 인가한 종합교육연수원을 통해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있고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교재·프로그램 개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의 표준 연수과정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사.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보장,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 생애주기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안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

제 정 안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취약계층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연령, 장애유형,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 비대면 교육 등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u> 1.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 한다)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12조(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기술적 특성과 식별 방법 2.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이용한 성범죄, 보이스 피싱 등 디지털 범죄의 위

제 정 안
협성과 대응 방법 3.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관련 법적·윤리적 쟁점과 책임 4.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로 인한 범죄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구제 절차 <u>③ 교육부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u> 제13조(생애주기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①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②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 ③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 및 ④ 생애주기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편성·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여부·연령·지역 등 계층별로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국민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으며, 비판적 사고력 등을 균형감 있게 함양하고,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2025년 기준)>

구 분	종합능력	보유(접근)정도	이용역량	활용능력
일반인	100	100	100	100
장애인	84.1	98.1	77.0	84.3
고령층	71.8	95.4	56.2	75.6
저소득층	97.0	99.8	94.1	98.5
농어민	80.6	97.2	72.4	80.5

※자료: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12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기관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제11조제3항의 규정²⁶⁾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①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②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 ③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 및 ④ 생애 주기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도, 언급된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교

2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11조(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 한다)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시설

육은 필요한바 동 조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협력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언론진흥재단²⁷⁾은 1994년도부터 뉴스와 정보의 분별력을 중심으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하고 있고, 학교·도서관·복지관·장애인시설·다문화센터 등 평생교육 시설과 협력하여 미디어 강사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 제정안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관련한 협의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AI 리터러시 교육과 교재·수업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협의대상 관계 부처의 장관 범위에 포함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둔다.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강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교육 프로그램 관련 협력대상 기관에 포함하고,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련 협의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 연차보고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안 제14조·제15조·제16조)

제 정 안
제14조(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 ① <u>교육부장관은 2년마다 연령대별·지역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 접근 및 이용 실태 2. 비판적 이해 및 허위·조작정보 식별 능력 3.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능력 4. 미디어 표현·소통 및 디지털 윤리 의식 5. 정보 취약계층의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 ③ 실태조사 결과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연차보고서) <u>교육부장관은</u> 매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 실적과 성과를 담은 <u>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여야 한다.</u> 제1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u>교육부장관은</u>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시청자미디어재단</u>,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u>한국언론진흥재단 등</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를 <u>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u>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 제14조부터 제16조는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일반에 공표하며, 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실제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동 결과에 대한 공표의무,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같이 다른 부처 소관의 기관이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전문기관 지정에 앞서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의 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연령별·지역별 수준과 격차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정책 추진실적과 성과를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연차보고서를 성과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교육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이 아닌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동 제정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임.

자. 업무의 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17조·제18조·제19조)

제 정 안
제17조(민간 협력)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u>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민단체, 학술단체, 언론기관 등 <u>민간과의 협력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u>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u>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u> 이 법에 따른 <u>권한의 일부를</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u>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안 제1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제18조는 국무총리 및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제19조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²⁸⁾

²⁸⁾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²⁹⁾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제정안의 실효성 및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정책과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 단체에 국무총리 및 주관기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할 수 있으며, 위탁 업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함에 따라 미

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9)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의 공정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6
